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,

김영태, 김원섭, 김정도, 김재우, 김춘남,

박교상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 안주찬,

양진오, 이명희, 이상호, 이지연, 장미경,

장세구, 정지원, 추은희, 허민근 (24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O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차량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생 극복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O 가족배려주차장 정의 신설(안 제3조제6호)
- O 가족배려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O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표시(별표 8)

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주차장법」제6조, 제10조, 제12조, 제19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5. 8. ~ 5. 13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• 노인,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•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동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주차면의 도안과 문구를 별지 서식에 규정하여 주차구역 규격·디자인의 표준화로 시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별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기존 주차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일반 주차 구역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실시하여야할 것임.
- 향후 마트, 쇼핑몰과 같은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의 확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7. 심 사 결 과: <u>원안가</u>결